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- ◇ 행정규칙명 : 「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」
- ◇ 제·개정 이유: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교육 대상, 방법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- ◇ 주요내용: 기존 연 12시간 이상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발급하던 교육 수료증을 모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‘연 12시간 이상’ 문구 삭제(안 제3호)